

장학금 지급 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(신설)	<p>제8조 1. 교내장학금</p> <p>파. 바우처 장학금: 교육·연구·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우처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바우처 장학금의 종류, 지급 대상, 운영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.</p>	
(신설)	<p>제8조 1. 교내장학금</p> <p>하. 외국인 장학금: 외국인 입시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의 학부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장학 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.</p>	<p>○ 등록금 지원 장학금(지곡장학금)은 내국인 학부생과 동일하게 지원되나, '순수외국인(International Admissions I) 전형' 학부생 대상으로 생활비 장학금, 한국어 우수 장학금, 입학 특전 등 신설되는 장학금이 있음.</p>

장학금 지급 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2조(장학금 지급의 제한) 해당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기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한다.</p> <p>① 휴학, 자퇴, 제적, 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. 다만, 근로장학금의 경우 학적변동 후 재적생인 경우 학적변동 전일까지 활동한 내용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장학금 지급의 제한) 해당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기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한다.</p> <p>① 휴학, 자퇴, 제적, 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. 다만, 근로장학금 및 봉사장학금의 경우 학적변동 후 재적생인 경우 학적변동 전일까지 활동한 내용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○ 봉사장학금의 경우, 학적변동(휴학) 전까지 학생 자치단체 활동한 내역에 대하여 장학금으로 보전하고자 함</p>
<p>(신설)</p>	<p>제12조(장학금 지급의 제한) 해당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기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한다.</p> <p>①~⑦ (생략)</p> <p>⑧ 사망, 중대한 질병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, 기지급된 장학금의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○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학적변동자(사망제적) 장학금 환수에 대한 예외 처리</p>

장학금 지급 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8조 1. 교내장학금</p> <p>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학문 탐구, 글로벌 소양 함양 및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운영한다.</p>	<p>제8조 1. 교내장학금</p> <p>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학문 탐구, 글로벌 소양 함양 및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운영한다. 아래 명시된 교내장학금 이외에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○ 기존 항목 삭제 후 상단으로 배치</p>
<p>제8조 1. 교내장학금</p> <p>파. 위에 명시된 교내장학금 이외에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(신설: 2023.12.1.)</p>	<p>제8조 1. 교내장학금</p> <p>(삭제)</p>	